

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안 설 명

싱크홀 발생 원인조사 및 안전대책 특별위원회 문종철 의원

존경하는 김미경 위원장님!

그리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 여러분!

안녕하십니까? 문종철 의원입니다.

본 의원은 오늘 김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지난 6월 10일 본 의원 외 14명이 공동으로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건축조례」의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.

본 개정안을 발의한 취지는 최근 건축공사 현장에서 지반굴착에 따른 도로함몰이나 주변건물 부동침하 등 안전사고가 빈발함에 따라 「서울특별시 건축조례」에 과거 2005.12.29.일 이전까지 존재하던 굴착심의제도를 부활함으로써 지반굴착공사에 대한 안전성 사전검증 및 건축공사장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.

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,

시 건축위원회 심의사항에 ‘제7조제1항 다목에 의한 건축물 중 깊이 10미터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상 굴착공사, 높이 5미터 이상 옹벽설치 굴착공사로 토질상태, 지하수위, 굴착계획 등 해당 대지의 현장여건에 따라 허가권자가 굴착심의회가 필요하다고 판단 하는 공사의 설계에 관한 사항’을 신설하고,

구 건축위원회 심의사항에도 동일한 내용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.

본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앞으로 건축공사장 및 주변 현장에서 지 반굴착에 따른 도로함몰 등의 안전사고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확 신합니다.

존경하는 김미경 위원장님!

그리고 도시계획관히위원회 위원 여러분!

모쪼록 본 의원 외 14명이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